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002
----------	-------

발의연월일 : 2025. 8. 6.

발 의 자 : 전용기 · 박지혜 · 서영석
권칠승 · 문진석 · 한준호
전진숙 · 손명수 · 송옥주
임호선 · 윤종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및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폭력행위 외에도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동으로 회의를 방해하고 국회의 위신을 훼손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폭행·협박 외에도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는 점과 「법원조직법」에서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현행법에도 국회의 회의에서 국회의 위신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 회의에 참석한 증인, 감정인, 참고인이 국회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언행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률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증인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방지하여 합리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5조 및 제166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장의 제목 중 “금지”를 “등의 금지”로 한다.

제165조의 제목 중 “금지”를 “등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29조에 따라 출석한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은 국회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의 제목 중 “방해죄”를 “방해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제165조를”을 각각 “제165조제1항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6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국회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한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에 필요한 절차 등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u>등의 금지</u>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생략)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u>등 금지</u>)
<u><신설></u>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29조에 따라 출석한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은 국회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국회 회의 <u>방해죄</u>)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6조(국회 회의 <u>방해죄 등</u>) ① <u>제165조제1항을</u> ----- ----- ----- ----- ----- ----- ----- ----- ----- ----- -----.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	② <u>제165조제1항을</u> ----- -----

